



# 법무법인 한서

HAN SEO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-6 케이원빌딩 7층

TEL02-3473-3990 /FAX 02-6455-9932

담당 : 이왕근 차장

발 신 : 법무법인 한서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-6 케이원빌딩 7층

수 신 : 동국대학교

제 목 : 프로그램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의

서명	일자	2012.2.10	지시		
접수	시간	16:00	견장	실장	M
처리과	번호		제	담당	M
담당자		정보윤명림	공	담	
		이왕근	탐		
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본 법무법인은 PC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'ZOOK'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개발하여 이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(주)마스터소프트(이하, '저작권자'라 함)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고소, 합의,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률적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법률상 대리인으로서, 위 저작권사를 대리하여 이 서신을 보냅니다.
3. 현재 저작권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, 귀사는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사가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(ZOOK)을 무단으로 복제, 설치 및 사용하는 등 저작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.
4. 귀사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는 저작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, 따라서 귀사는,
  - (1)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(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됨),
  - (2) 위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.
5. 본 법무법인은 귀사의 금번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, 저작권사가 입은 피해의 내용 및 해결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오니, 이에 관하여 저작권사의 적법한 법률상 대리인인 본 법무법인의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6. 만약 귀사가 본 공문을 수취하시고도 3일 이내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귀사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형사 고소절차를 진행(공문발송일기준 15일전후)할 것이오니,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
7.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행위자 및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있을 것이며, 본 법무법인은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입니다. 이때 귀사는 판결금 및 소송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까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8. 만약 본 법무법인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귀사가 위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. 이 경우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용권자임을 회신하여 주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 한편, 귀사 또는 귀사의 직원이 아닌 타 업체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과 해당 업체를 알려주시어 공연히 귀사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.

9. 기타 공문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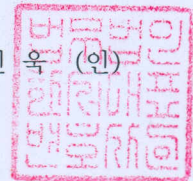
담당 : 저작권차장 이왕근    HP :010-4642-7504  
TEL:02-3473-3990  
이메일:inno-00@hanmail.net

2012. 02. 07.

위 저작권사의 법률상 대리인

법무법인 한서

담당변호사 오진욱 (인)



!!본 문건은 지정된 수신인만을 위한 것이며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, 기밀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

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, 배포,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.

본 문건이 잘못 전송된 경우, 발신인 또는 당사에 알려주시고, 본 문건을 즉시 파기 또는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